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신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해당 신기술이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보관·저장하는 등의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환경부령에서 정하였으나, 앞으로는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되 나머지 구체적인 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<환경부 제공>

●고용노동부령 제246호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3월 29일

고용노동부장관 인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6호 작업범위란 나목 중 “안전규칙 제254조에 따른 위험물”을 “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“안전보건규칙”이라 한다) 별표 1에 따른 위험물질”로 하고, 같은 표 제9호 작업범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안전규칙 제328조제1항제3호다목”을 “안전보건규칙 제302조제1항제3호다목”으로 하며, 같은 표 제10호 작업범위란 중 “안전규칙 제283조”를 “안전보건규칙 제256조”로 한다.

고용노동부령 제216호 유해·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: 2020년 12월 31일까지
2.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: 2021년 6월 30일까지
3.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: 2021년 12월 31일까지
4.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: 2022년 6월 30일까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3월 30일 전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타워크레인 설치·해체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이수에 관한 특례기간을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장하는 한편,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고용노동부 제공>